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4. 22 선고 2020가단143660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원

피고1. B

2. C

변론 종결2021. 3. 4.

판결 선고2021. 4. 22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3,750,558원 및 그 중 2,392,317원에 대하여 2020. 7. 30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.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가.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. 10. 13. 체결된 증여계약을 3,750,55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 C은 원고에게 3,750,5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○ 피고 B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○ 피고 C: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판사김병훈

별지